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30일, 고동진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9.)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동진 의원)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

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비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료아동 중 20.7%가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에 필요했지만 받지 못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진료비 부담’(58.5%)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5.6점)는 일반청년·청소년의 삶의 만족도(6.72점)에 비해 낮고, 자살생각 경험 등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보호종료아동 중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전체 청년 10.5%보다 상당히 높음)이므로 의료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가 추가되는 경우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